

# 5.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국제교육원 운영 규정

제정일: 2009년 9월 10일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설립목적)**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부설 국제교육원(이하 “교육원”이라 한다)은 하나님의 의도에 기초하는 세계선교와 베뢰아운동의 국제적 진흥을 위한 교육과 훈련, 세계선교와 국제적 진흥을 위한 자료 간행 및 제작, 한국교회의 국제화와 해외 지도자의 영적 성장, 해외 교회의 부흥과 유대를 그 목적을 두고 설립한다.

**제2조(소재)** 교육원은 본교 안에 둔다. 단, 교육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위치에 둘 수 있다.

**제3조(사업)** 교육원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- ① 세계선교와 베뢰아운동의 국제적 진흥을 위한 교육과 훈련
- ② 해외 교회의 부흥과 유대를 위한 교육과 훈련
- ③ 한국교회의 국제화와 해외 지도자의 영적 성장을 위한 교육과 훈련
- ④ 세계선교와 국제적 진흥을 위한 자료 발간
- ⑤ 기타, 교육원의 발전과 목적 성취를 위한 사업

## 제2장 조직

### 제4조(원장)

- ① 교육원은 원장을 두며 원장은 본교 총장이 임명한다.
- 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제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
- ③ 원장은 연수생의 교육과 훈련을 지휘 감독한다.

### 제5조(운영위원회의 조직)

- ① 본원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- ②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.
  1. 당연직 위원: 국제교육원장, 본교의 교무처장, 학생처장, 사무처장
  2. 위촉 위원: 총장이 추천하는 2~3인으로 선정
- ③ 확대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을 비롯한 총장 추천 관계자로 구성하되, 이때의 위원장은 총장으로 한다.

**제6조(운영위원회의 임무)**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일을 담당한다.

- ① 운영 규정의 수·개정 심의

- ② 사업 내용에 대한 심의 의결
- ③ 예·결산에 대한 심의 의결
- ④ 분기별 업무 회의
- ⑤ 연수생 지도와 관련된 중요사항(제24조 1항의 ③④⑤의 경우)
- ⑥ 기타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⑦ 확대위원회는 총장 혹은 교육원장이 요청하는 특별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

### 제3장 연수생 교육과정

**제7조(연수기간)** 정기연수기간은 다음과 같다.

베뢰아 A과정(3개월), 베뢰아 B과정(6개월), 베뢰아 C과정(12개월), 베뢰아 D과정(기타)

**제8조(신앙훈련)** 연수생은 다음의 사항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.

- ① 성도의 5대 의무를 준수한다.(주일성수, 십일조, 새벽기도, 성경상고, 전도)
- ② 총장이 지정하는 집회에 참석한다.(본교 부흥회 사경회 및 베뢰아특별성회, 총회 목회자성장대회 및 연차총회, 여름수련회 등)
- ③ 새벽기도는 학기 중에는 기숙사 경건회, 방학 중에는 교육원이 지정한다.

**제9조(베뢰아연수)**

- ① 베뢰아연수는 베뢰아아카데미 영상반과 주제별 베뢰아 강의 등으로 구성된다.
- ② 연수생은 공식적인 입학절차를 거쳐 베뢰아아카데미 영상반을 수강하고 반드시 수료해야 한다.
- ③ 연수생은 베뢰아강의와 관련된 연수활동을 이수해야 한다.

**제10조(신학연수)**

- ① 신학연수는 본교의 정규 교육과정에 입학하여 수학하는 것을 말한다.
- ② 신학연수 입학자는 베뢰아아카데미를 수료했거나, 이수 중인 자라야 한다.

**제11조(목회연수)** 목회연수는 설교, 예배, 심방, 기도, 전도, 양육 등에 관한 연수를 말하며, 장기 연수생의 경우 6개월 내지 1년을 지정목사의 지도하에 목회훈련을 받아야 한다.

**제12조(봉사활동)**

- ① 연수생은 교육원이 지정하는 유관기관에서 일정 기간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.
- ② 목회연수 차원에서 봉사활동을 지정할 수 있다.

**제13조(한국어연수)**

- ① 본교 부설 국제언어교육원(이하 언어원)에 입학하여 입국한 연수생은 한국어 연수를 성실히 이수해야 한다.
- ② 한국어 연수는 베대원 부설 언어원에 위탁하여 실시한다.
- ③ 한국어 능통자는 한글연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**제14조(특별연수프로그램)** 교육원은 연수생의 체재기간을 고려하여 특별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.

## 제4장 연수생 관리

**제15조(선발기준)** 연수생 선발 기준은 다음 각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.

- ① 본교 혹은 본교 언어원에 입학할 허락 받은 외국인
- ② 해외 장기간 체류 등으로 인해 연수가 필요한 내국인
- ③ 유관기관(기독교비료아교회연합 및 서울성락교회 등)의 추천을 받은 자

**제16조(구비서류)**

- ① 연수지원자는 연수신청서, 자기 소개서, 성적증명서,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사본, 추천서, 재정보증서, 출석 및 성적 열람동의서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(성적증명서,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사본, 재정보증서는 해당자에 한함)
- ② 본교 입학자는 입학에 맞는 제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
- ③ 연수생은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조건을 서류로 입증해야 한다.

**제17조(경비, 장학금 등)**

- ① 연수경비는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유관기관을 통해 체재비를 포함한 연수 및 수학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장학금 혹은 후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.
- ③ 장학금 신청 및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본교 장학금 지급규정과 유관기관의 지급규정을 따른다.
- ④ 체재비를 포함한 연수경비를 지원받는 연수생은 취업 또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⑤ 출석 미달이나 성적 불량으로 인한 재수강이나 장학생 미추천 등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으로 해결해야 한다.

## 제5장 연수생 생활 규칙

**제18조(숙소)**

- ① 본교 생활관에 입사한 연수생은 생활관의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.
- ② 게스트하우스 이용자는 ‘게스트하우스 이용 상 주의사항’을 준수해야 한다. 교육원은 사용과 청결, 비품관리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.
- ③ 비품 훼손이나 분실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.

**제19조(외출 및 출국)** 연수생은 장거리 외출 및 장기간 외출(외박)을 할 경우나 본국이나 해외로 출국할 경우에는 교육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.(외출 및 출국신고서 작성)

**제20조(자료 및 장소 사용 등)**

- ① 교육원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 및 오디오, 비디오, DVD 등 자료가 필요할 경우 연수 담당자를 통

해 요청 하여 활용할 수 있다.

- ② 장소 및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엔 연수 담당자에게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.
- ③ 공공시설(교육원과 교회 등)의 전화기를 사용한 개인적인 국제전화는 금지한다.(개인이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)

**제21조(신학 연수생)** 신학 연수생은 다음의 각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① 연수생은 본교 학칙을 준수해야 한다.
- ② 연수생은 한글 습득을 위해 노력하여 한글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.
- ③ 연수생은 매학기 학생회비 및 학급회비 등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으로 납부해야 한다.
- ④ 연수생은 채플 및 신학과 실천 과목, 성경고사를 패스해야 한다.
- ⑤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내용은 본교 내부규정에 따른다(수강신청, 도서관 및 부속시설 이용 등).

**제22조(출석관리)** 연수생은 특별한 사유 없이 수업과 집회에 빠질 수 없으며, 부득이한 경우 발생 시 연수 담당자나 통역자에게 사전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.(무단결석 시 사유서 제출)

## 제6장 연수 평가

**제23조(평가 항목)** 연수생에 대한 평가 항목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.

- ① 신앙 훈련 평가
  - 1. 성도의 5대 의무 평가
  - 2. 집회 출석 평가
  - 3. 방학 중 훈련 평가
  - 4. 교육원장(혹은 담당자)의 평가
- ② 베뢰아 연수 평가
  - 1. 출석 평가
  - 2. 베뢰아원장(혹은 담당자)의 평가
- ③ 신학 연수 평가
  - 1. 출석률과 성적 평가(B학점 이상)
  - 2. 과목 담당 교수의 평가
  - 3. 연수담당자(혹은 통역자)의 평가
- ④ 목회, 봉사, 생활 평가
  - 1. 목회훈련 담당 목사의 평가
  - 2. 봉사기관 혹은 해당 교회의 담당자의 평가
  - 3. 생활 평가는 기숙사 사감의 평가
- ⑤ 한글 평가
  - 1. 출석 및 성적 평가
  - 2. 언어원장의 평가
- ⑥ 연수종합평가
  - 1. 연수담당자의 평가

2. 연수생 자신의 자체 평가

**제24조(평가의 활용)**

- ①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본인에게 통보 후 다음 각호의 제재를 경중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.
1. 경고 조치(구두, 문서)
  2. 관련 기관 보고
  3. 연수중단 혹은 연수비 지원 중단
  4. 연수비 회수
  5. 출국 조치
- ② 향후 진로 지도 및 면담 시 판단자료로 활용된다.

**제7장 기 타**

**제25조(출석 및 성적 열람)** 교육원은 본교의 연수생 개인의 출석과 성적을 열람할 수 있다.

**제26조(준용)**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학칙 및 제 규정을 준용한다.

**부 칙**

1.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